

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: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자

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사분야별 감리원: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자

제1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.

가.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

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

나.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: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또

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1)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

2)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

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

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

3)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감리원의 배치기준 등)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“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 격이 있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	제18조(감리원의 배치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 리원의 경우</u>	1. <u>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 리원: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본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적 합한 자</u>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 <u>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:</u> <u>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</u> <u>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. 다만,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.</u>	2. <u>공사분야별 감리원: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본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 음 각 목에 적합한 자</u>
가. <u>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 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</u>	가. <u>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공사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</u>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

다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

② ~ ④ (생략)

나.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: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1)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

2)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

3)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

<삭 제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